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84
----------	------

발의연월일: 2026. 6. 9.

발 의 자: 장길천·고상순·고양석

김강산·김미영·김상배

서민우·신진호·이동길

전은혜·추윤구·허은 의원

1. 제정이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와 광진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

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나. 의정회 사업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의정회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라. 의정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안 제6조)
- 마. 의정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FAX: 02-454-0438,
E-mail: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와 광진구민의 공공복리 발전에 이바지할 광진구 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신청)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와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2.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그 밖에 위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정에 따라 필수로 수반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안영신(02-450-2830)

붙임**관계법령****법규명****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규명**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재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규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u>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u>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한다.	